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http://www.kogas.or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이호현 과장(044-203-5230), 이윤진 사무관(044-203-5214)
한국가스공사 요금제도팀 안태훈 팀장(053-670-0871), 김종민 주임(053-670-0873)

9.1(화)부터 가스요금 4.4%(소매요금 기준) 인상

- 국민부담 고려해 인상요인의 50% 부분 반영 -
-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경감 필요서류 면제 등 절차 간소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한국가스공사(사장 이승훈)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**9. 1.(화)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.4% 인상**(서울 기준)하는 수준으로 **승인하기로 했다.**

○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시점의 **유가 및 환율 상승**으로 인한 **요금인상 요인을 반영**한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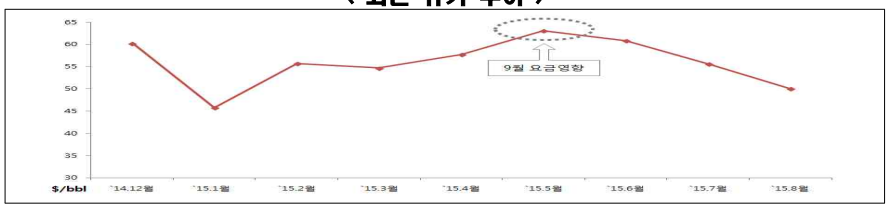
- 원료비는 2개월마다(홀수월) **연동제**에 따라 **유가, 환율 등 변화**가 **자동적**으로 **반영**되며, **±3% 초과 변화요인**이 있을 경우 **요금을 조정**

- 9월 요금에는, LNG 거래계약 관행으로 **통상 유가에 4개월 후행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특성** 상 **상대적으로 높았던 5월 유가가 적용**되었고,

- 이에 더하여 **월초 상승한 환율**에 따라 **도입원료비가 상승**(**11.7003원/MJ → 13.1851원/MJ**)함.

○ 5월 이후 최근 유가의 하락분은 환율변동분과 함께 11월 이후 액화천연가스(LNG) 도입원료비에 반영할 예정이다.

< 최근 유가 추이 >



□ 당초 **9월 요금 인상요인**은 **대외환경 악화로 9%**(소매요금 기준)에 이르렀으나, **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**에서 요금 **인상률을 4.4%로 최소화**했었다.

○ **9월 요금 동결 시,** 통상 가스사용량이 많아 요금 부담이 큰 **동절기**(11월 이후) **요금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**해

- 동절기 **국민부담 경감 취지에 보다 부합**하고자 **금번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**하게 된 것임

○ 아울러,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계속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의 **누적결손금이 확대되어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**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.

□ **이번 요금 인상**에도 불구하고, 도시가스 **요금은 1월**(△5.9%), **3월**(△10.1%), **5월**(△10.3%)의 **지속적 인하**로, **누적기준 전년 말 대비 총 21% 인하**(21.7477원/MJ → 17.2356/MJ)된 수준이다.

□ **9월 요금인상**에 따라 전 용도 **평균 도시가스 요금**(서울시 기준)은 **0.7191원/MJ 인상된 17.2356원/MJ로 조정**되고,

○ 소비자 물가는 약 0.08%p, **가구당 평균요금**은 현재 대비 약 **1,595원/월 증가**할 것으로 보인다.

□ 한편, 이와 병행해 **8.31일부터**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가스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**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를 대폭 개선**했다.

○ 그간 **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던 신청**을 **주민센터까지 확대**하여 주민센터 이용이 잦은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,

- **신청·갱신 시**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국가유공자증 등 **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확인**이 가능한 **필요서류의 제출을 모두 면제**

* 전자정부서비스로 확인할 수 없는 장애 외국인 또는 일부 다자녀가구에 한해 서류를 제출

○ 또한, 가스요금 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경감자격 관리를 일원화하고, **경감 적용시점을 신청일 익월 1일**에서 **신청일 익일**부터로 **변경하여 혜택을 확대**할 계획이다.

참고 **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경감 제도 개선 주요내용**

1 **(경감신청) 신청대상**을 **일반도시가스사업자**에서 도시가스사 또는 **주민센터**로 확대하고, **제출 필요서류 면제**

○ 주민센터 이용이 잦은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

○ **신청·갱신** 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증 등 **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**한 **필요서류의 제출을 면제**

* 전자정부서비스로 확인할 수 없는 장애 외국인인 경우 또는 일부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만 신청·갱신 시 서류를 제출

2 **(경감자격 확인·관리) 가스도매사업자가 운영**하는 **'가스요금 경감관리시스템***'을 통해 경감자격 **확인·변동 관리 일원화**

* 경감자격 관련 데이터를 가진 관계부처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연계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경감신청자 또는 수혜자의 경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

○ **도시가스사**가 신청자의 **개인정보를 시스템에 입력**하면 **가스공사**가 직접 이를 통해 **자격확인 및 갱신절차 진행**

- **주민센터** 신청인은 **복지부에서 신청인의 자격확인** 후 도시가스사로 결과를 통보하고, **도시가스사는 이를 요금경감시스템에 등록·관리**

< 개선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절차 >

신청		자격확인		자격변동 확인
· 도시가스사 · 주민번호 등 제공	⇨	· 가스공사 신청정보 취합, 자격요건 확인·통보	⇨	· 가스공사 수혜대상자 정보 주기적 확인(매월)
· 주민센터 · 주민번호 등 제공		· 복지부 자격요건 확인 후 도시가스사 통보 · 경감자격 확인자 요금 경감관리 시스템에 등록		

○ **신청자의 별도 조치 없이** 경감자격 **확인 및 변동이 주기적**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**자격확인 기간 감소 및 관리 편의성 개선**

3 **(경감 적용시점)** 경감자격 확인 소요시간 감소로 경감 적용시점을 **신청일 익월 1일**에서 **신청일 익일로 변경**하여 적용